

기안용지

발부기호 부서번호	(44-110 315)	결결구경 선결가항
처리기간		
시행일자		
보준년한		
보조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건축관리과
기안제출자	유정돈 7. 2.	조국남 건축관리과장
경유 수신 참조	국안참조	법무심사 예유 제 계장 취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 경정안(부속 1)	3702
<p>1. 서울특별시 인구 적3768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을 일부를 별첨안과 같이 개정코사 합니다.</p> <p>2. 주요 개정 내용</p> <p>가. 건축 최소면적을 50평이상으로 규정</p> <p>나. 건물 층수가 미과 일차등 소완</p> <p>다. 원지변경 노는 차오 미과시의 노도 규정 신설</p> <p>라. 환기 확장권의 증감률 대금 경산규정 신설</p>		
첨부	1. 개정안요기부. 2. 개정안 1부. 3. 개정대비표 1부, 2부.	정서 관인 발송
347		

0201-1-8A (자)
1969.11.10 승인

150mm×258mm (인쇄용지(2중) 50g/m²)
프란경 (5,000,000매 인쇄)

3
 1. 경정안에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을 개정함
 2. 건축 최소면적을 50평 이상으로 규정함
 3. 건물 층수가 미과 일차등 소완
 4. 원지변경 노는 차오 미과시의 노도 규정 신설
 5. 환기 확장권의 증감률 대금 경산규정 신설
 6.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을 개정함
 7.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을 개정함
 8.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을 개정함
 9.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을 개정함
 10. 도시계획관리법 제68조 제2항을 개정함

개정안

수신 동서중보심장

발신 국장

제목 서울특별시 어린이 관공민 적분규정 개정 의뢰

1. 서울특별시 어린이 관공민 적분규정을 개정 하였고 의뢰 하오니
시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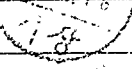
참조 개정안 1부. 끝.

214
시장

경 정 요 지

1. 건축 적소면적은 50평 이상으로 규정하여 다시 방침과 입지 시험
2. 건물 적비서의 면적 축진을 위하여 필기 예증기내의 기존 무허가 건물(70. 4. 20 이전 건물) 부가 면적지도 보완
3. 환기변경 착오 면적 등으로 인한 직역 불능시의 분경 적소를 위하여 적도규정 신설
4. 환기변경으로 인한 환기 확경전의 등감면 적금 경산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 및 처분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관리 및 처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50명 미만의 토지 또는 50명 이상의 토지라도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지구에 비추워 건축허가 기준 평수 미달토지로서 인접한 기존 건물 및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토지는 다음 각호의 토지

제6조 제2항 제2호 목 4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토지 또는 사유지가 50명 미만이거나 50명이상이라도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지구에 비추워 건축허가 기준 평수 미달일지 인접 토지

제6조 제2항 제2호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획경리 사업 지구내의 토지중 원뿔상에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의 축조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존 무연과 건물 (1970. 6. 20 이전 건물 및 시설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

제1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입찰 보증금은 낙찰후 계약보증금 및 백과담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시역 귀속 조치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호 단서중 "별의지까지"를 "전금 납부시까지"로 한다.

제1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5조의 1 (비율)

1)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이나 또는 착오로 2중 매각 하였음이 발견 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약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당초 과액을 회계하고 그액 상당한 토지로 대포 할 수 있다.

2) 대포시 과약 회계 토지의 가액은 회계시의 가액으로 하고 대포한 토지의 가액은 대포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과약 토지가액의 1/4을 초과 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경산 하여야 한다.

3) 제16조 제7항 제5호의 경우에도 전. 각항을 준용 할 수 있다.

제16조 제7항중 "도농서및 위임장 교부일 기준으로"를 "대금 납부일 의 가액을 기준으로" 로 한다.

제18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토지구획준비 사업 지구내의 토지중 원시 확정 처분한 환지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증감 발생시 토지의 증감액 대금 경산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잔액대금 이자는 환지 변경일로부터 대금 반환시까지 이를 기준하여 연 5분익이자를 가산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8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책비지 관리 및 기본 규정 개정 (안)

연	계	이
행	년	유
<p>제6조 1항 2호 마목 3</p> <p>70평 미만의 건축허가 기준 병수 미달로 처로서인 인접한 기존 건물 및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이를 같이 매각 하였을 때 지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 다음 각호</p>	<p>제8조 1항 2호 마목 3</p> <p>50평 미만의 토지 또는 50평 이상의 토지라도 도시 계획법상의 지역, 지구에 비추워 건축허가 기준 병 수 미달 토지로서 인접한 기존 건물 및 토지와 불 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 다음 각호 의 토지</p>	<p>1. 도시의 양식적 양지 2. 건축 최소선 등 도시계획으로 공익을 취사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제6조 1항 2호 마목 3의 나</p> <p>토지 또는 사유지가 건축허가 기준 병수 미달일 때 인접 토지</p>	<p>제8조 1항 1호 마목 3의 나</p> <p>토지 또는 사유지가 30평 미만이거나 50평 이상이라 도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지구에 비추워 건축 허가 기준 병수 미달이 인접 토지</p>	<p>상</p>
<p>제6조 1항 1호 마목 5</p> <p>구획장이 사업지구 중 원지확장계획 지구 내의 토지 중 원지확장에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이 축조되어 있 는 경우 철거된 이후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 및 시설물이 무허가 양성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때 다음 하의도 준칙이 있는 700평 미만의 토지</p>	<p>제6조 1항 2호 마목 5</p> <p>구획장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중 원지확장에 없는 건물 및 시설물 축조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존 무허가 건물 (75%, 6.10 이인 건물 및 시설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토지</p>	<p>1. 건물 축조된 것과 관련된 2. 기존 무허가 건물의 건물용 시설물과 인접 지역</p>
<p>제72조 1항 2호</p> <p>임대보증금은 다함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납입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해 귀속 조치 하여야 한다.</p>	<p>제72조 1항 2호</p> <p>임대보증금은 다함부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로 증대하고 납입자가 계약 체결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임대금으로 시해 귀속 조치 한다.</p>	<p>임대보증금의 기입보유금 반환과 기입보유 금의 매각대금의 기입보유금 반환과</p>
<p>제74조 2항 제1호</p> <p>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 하면 종합공채 할 수 있으 며 일시불 기간은 6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대금을 납부치 못하면 종합공채를</p>	<p>제74조 제2항 제1호</p>	

<p>받지 못하며 입지불 기간 경과임으로 부채 해약시까지 년 20%의 연복 이자를 전부 납부 하여야 하며 그 비율 결과를 매년 해약 조치 할 수 있다.</p>	<p>잔금 납부시 까지</p>	
<p>사상권</p>	<p>제75조의 1 (대도) 1항 토지를 매각한후 원가변경이나 또는 약오모중 매과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가락의 사유로 인 하여 개인 이해 부응이 될 때는 당초 가의 을 액제하고 그 이상당한 토지 대로 환수 있다. 2항 대도시 지역의 액제 토지획 가액은 지역의 액제 시의 가액으로 하고 대도시 외 지역의 가액은 대 도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당 토지가액 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하여야 한다. 3항 제7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도 전 과정을 준 용 할 수 있다.</p>	<p>원가변경, 약오모중, 개인 이해로 인하여 고액 이상 부응시의 액제 할 수 있다.</p>
<p>제76조 2항 전2항의 감평액금 이자를 잔금 납부임으로 부채 해약 확정 임까지의 입수를 계산 정산하며 증평액금은 백분봉서 및 위임장 교부임 기준으로 한다.</p>	<p>제76조 2항 전2항의 감평액금 이자를 잔금 납부임으로 부 채 해약 확정 임까지의 입수를 계산 정산하 며, 증평액금 정산은 대금 납부임의 가액임 기준으로 한다.</p>	<p>증평액금 납부임과 위임장 교부임의 가액으로 인 한 분경 할지</p>
<p>신 설</p>	<p>제78조 4항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역내 토지용 원지확</p>	<p>78조 2항에 원지확정후의 증평액금 정산 규정이 있으나 원지확정전의 증평액금 정</p>

2.15
시장

정적분권 환경변경으로 인한 고가의 증감 및 상규정이 없어 이점 신접
생시 증감률 대금의 증감은 위 사항에 따라
처리하고 감액대금 이하는 순기본영업로 부력
대금 반환시까지도 기존 약역 년 5%의 이자를
가산한다.

서울특별시예규 제 111호

서울특별시청사건관리 및 업무처리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청사건관리 및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아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50坪未満의 工區 또는 50坪以上の 土地라도 都市計画法의 地域區에 비후위 建築許可 標準坪數 未達 工區로서 隣接한 既存建物 및 工區의 不可分の 關係가 있다^고 認定되는 工區中 다음各條의 工區

제8조 제2항 제2호 아목 3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土地 또는 私有地가 50坪未満이거나 50坪以上이라도 都市計画法의 地域區에 비후위 建築許可 標準坪數 未達일 때 隣接 工區

제8조 제2항 제2호 아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区劃整理事業区域内の工事中角地に於て
是の建物及施設物に業造りをしては
是れは 既存敷許可建物(1970.6.20.以前
建物及施設物)に業造りをしては 100%
未満の土地

第12条第1項第2号を 是れと 是れと 是れと

之れが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代金の 一部を 充てがふ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償還 及び 是れを 境越えに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に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第14条第2項第1号但書中 "解任時" を
"残余の時" と 是れと

第15条の1 を 是れと 是れと 是れと

第15条の1 (注)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① 土地を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に 同様に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に 是れを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に 是れを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②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既存敷許可建物の

除時の価額を以て代土法土地の価額
に代土法の価額を以て計す。但し双土
地価額の差額が高價土地価額の半を
超過하지 못하여 差額を金銭으로 精算
하여야 計す。

③ 第16条第1項第5條의 境邊에 互 前各項
의 準用 算す 計す。

第18条第2項中 "先渡証券以 委託狀 交付日 算單
으로" 을 "代金의 交付日 的 價額을 算單으로"
로 計す。

第18条中 "第3項" 을 "第4項" 으로 計고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 計す。

③ 土地利墾限事業地區內의 土地中 換地
確定處分前 換地變更 是로 因功 土地의
增減發生時 土地의 增減 評代金 精
算은 第1項에 따라 處限하 減評代金
利子는 換地變更日로 부터 代金返還
時까지를 算單하여 年5%의 利子를
加算 計す。

이 規程은 1970년 12월 12일 부처 施行한다

결재
1970. 12. 12
서장

Lined area for text or notes, currently blank.